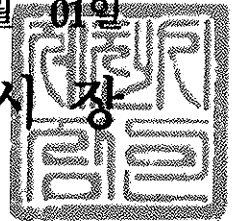


보상계획 열람공고

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-172(2015.08.20)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“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(권원확보)사업<2차>”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
2015년 09월 01일

제천시장



1. 사업명칭 :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보상(권원확보)사업
2. 사업시행자 : 한국전력공사
3. 사업목적 : 충북지역 기설송전선로 철탑부지 중, 미 보상 사유지 및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, 해당 전력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여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.
4. 사업개요
 - 가. 철탑수 : 98기
 - 나. 필지수 : 103필지
5. 사업시행기간 : 2015년 5월 ~ 2017년 4월 (24개월간)
6. 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 : 충청북도 청주시, 제천시, 충주시, 음성군, 진천군, 옥천군, 보은군, 괴산군, 단양군, 충남 천안시 일원
 - 나. 면 적 : 176,581㎡
7. 보상대상토지등의 명세 : 별도붙임
8. 보상의 시기, 방법 및 절차
 - 가. 보상시기 :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
 - 나. 보상금지급방법 : 은행계좌로 송금
 - 다. 협의장소 : 한전 충북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팀 또는 토지소유자 집(사무실)
 - 라. 협의방법 : 대면협의
 - 마. 보상금산정 : 주민추천감정평가업체 및 도지사의 감정평가업체 추천이 없을 경우 감정평가법인 2개소 이상의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
 - 바. 보상절차 : 보상계획열람공고→감정평가→보상금액 통보→계약체결 및 권리설정→보상금지급
 - 사. 주민추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도지사의 추천 :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, [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

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]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충북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. 보상계획 열람

가. 열람장소 : 한전 충북지역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부(☎043-251-2558)

제천시청 경제과(☎043-641-6644)

나. 열람기간 : 2015년 9월 7일 - 2015년 9월 24일(17일간)

10. 기타사항

보상토지(물건)의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및 개별통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우편통지 하였으나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공고로 대신합니다.